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절 기관 목록

한국 양허표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문화재청
4. 방위사업청(아래 주해3을 참조)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관세청
9. 산림청
10. 특허청
11. 기상청
12. 병무청
13. 농림축산식품부
14. 문화체육관광부
15. 교육부
16. 고용노동부
17. 환경부
18. 식품의약품안전처
19. 외교부
20. 여성가족부
21. 행정자치부
22. 법제처
23. 보건복지부
24. 법무부
25. 국토교통부
26. 국방부(아래 주해3을 참조)
27. 해양수산부
28. 국가보훈처
29. 인사혁신처
30. 국민안전처 (아래 주해5를 참조)
31. 미래창조과학부
32. 기획재정부
33. 산업통상자원부
34. 통일부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 국가인권위원회
37. 경찰청(아래 주해5를 참조)
38. 국세청
39. 국무조정실
40. 국무총리비서실
41. 조달청(아래 주해4를 참조)
42. 농촌진흥청
43. 중소기업청
44. 통계청
45. 대검찰청

뉴질랜드 양허표

1. 캔터베리 지진재건청
2. 왕실법률국
3. 자연보호부
4. 교정부
5. 내무부
6. 총리·내각부
7. 교육감사원
8. 정부통신보안국
9. 국세부
10. 뉴질랜드 국토정보부
11. 문화유산부
12. 환경부
13. 일차산업부
14. 기업혁신고용부
15. 국방부
16. 교육부
17. 외교통상부
18. 보건부
19. 법무부
20. 남태평양도서부
21. 사회개발부
22. 교통부
23. 여성부
24. 뉴질랜드 관세청
25. 뉴질랜드 방위청
26. 뉴질랜드 경찰청
27. 중대사기 수사국
28. 국무위원회

29. 뉴질랜드 통계청
30. 마오리 개발부
31. 재무부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주해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해2

이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해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13.5조 및 제20.2조(안보 예외)의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의 연방공급분류(FSC) 범주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다.

FSC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FSC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FSC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FSC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FSC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FSC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FSC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FSC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FSC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FSC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FSC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FSC 3416	선반

FSC 3417	절삭기
FSC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FSC 4110	냉장장비
FSC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FSC 4520	난방 및 온수장비
FSC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FSC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FSC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FSC 5530	합판 및 단판
FSC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부품
FSC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FSC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FSC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FSC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FSC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FSC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FSC 6840	살충소독제
FSC 6850	각종 특수화학물
FSC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FSC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FSC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FSC 7350	식탁용 식기
FSC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FSC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FSC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FSC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FSC 8110	드럼 및 깡통
FSC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FSC 9310	종이와 판지

주해4

조달청: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주해5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이 장은 제13.5조에 규정된 대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절 적용대상 상품 및 서비스

한국 양허표

상품

이 장은 제1절에 열거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서비스

WTO/MTN.GNS/W/120 문서에 포함된 WTO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다음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 밖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u>GNS/W/120</u>	<u>CPC</u>	<u>설명</u>
1.A.b.	862	회계 ·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8673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함)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83107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1.F.e.	86761*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86764	기술적 진단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u>GNS/W/120</u>	<u>CPC</u>	<u>설명</u>
	8814*	임업 부수 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 충방제 서비스는 제외)
1.F.g.	882*	어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1.F.m.	86751, 86752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유지 및 보수
1.F.p.	875	사진서비스
1.F.q.	876	포장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1.F.s.	87909*	속기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부가 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
2.D.e.	-	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음성 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6.D.	9404*, 9405* 9406*, 9409*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11.A.b.	7212*	국제운송(연안운송 제외)
11.A.d.	8868*	선박의 유지 및 보수
11.F.b.	71233*	컨테이너화물운송(연안운송 제외)
11.H.c	748*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해운대리업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 해운중개서비스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11.I. - 통관서비스
- 철도화물운송주선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초기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건부 수정양허안에 기재된 세부사항의 “일부분”을 가리킨다.

뉴질랜드 양허표

상품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에 명시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서비스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에 명시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장은 *MTN.GNS/W/120* 문서에 제시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체계(CPC)에 따라 적시된 서비스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조달(CPC 851-853)
 - 나. 공중보건 서비스 조달(CPC 9311, 9312, 9319를 포함한 CPC 931)
 - 다. 교육 서비스 조달(CPC 921, 922, 923, 924 및 929)
 - 라. 복지 서비스 조달(CPC 933 및 913), 또는
 - 마. 제5절에 명시된 조달

제3절 건설서비스

한국 양허표

이 장은 제1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체제(CPC) 제51대분류상의 모든 건설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건설서비스는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다.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 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뉴질랜드 양허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부속서 제1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MTN.GNS/W/120 문서에 제시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체제(CPC) 제 51 대분류상의 모든 건설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건설서비스는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다.

제4절 기준가

상품	:	130,000 SDR
서비스	:	130,000 SDR
건설서비스	:	5,000,000 SDR

이 절에 규정된 기준가는 2년 간격으로 조정되며 각 조정사항은 1월에 효력이 발생 한다.

각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환산 비율을 이용 하여 이 장에 따른 기준가액을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로 계산하여 공표한다.

환율은 자국통화로 표시된 기준가에 앞서 그 해의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각국 통화의 일일 가치 평균이다. 환율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 된다.

자국통화로 표시된 기준가는 2년 동안 고정된다.

- 가.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이 조정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1천만원까지 반올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된 건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1억원까지 반올림될 수 있다. 그리고
- 나. 뉴질랜드의 경우, 이와 같이 조정된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1천 뉴질랜드 달러까지 반올림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SDR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주요한 변화가 이 장의 적용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협의한다.

제5절 일반주해

한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장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뉴질랜드 양허표

이 장은 재외공관의 건설, 정비 또는 비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이 부속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인 또는 정부 당국에의 상품 및 서비스의 정부 공급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절 단일 전자적 접근 지점

한국의 경우,

www.g2b.go.kr 또는 필요한 경우 전자 관보 <http://gwanbo.korea.go.kr>

뉴질랜드의 경우,

<http://www.gets.govt.nz>

제7절 접촉선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339-012

뉴질랜드의 경우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Government Procurement Branch
Level 3, 15 Stout Street
PO Box 10729
Wellington